2014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안내

2014. 8. 6.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I. 개요
1. 정책기획 ····· 2
2. 사업기획 ····· 3
3. 과제기획 ····· 4
4. 향후일정 ····· 5

II. 공모내용
1. 정책기획 ····· 7
2. 성과분석 ····· 13
3. 사업기획 ····· 15
4. 과제기획 ····· 23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 28
2. 신청방법 ····· 30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선정 ····· 33
2. 평가절차 ····· 34
3. 연구사업관리 ····· 35

【별첨 1】 2014년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 38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49
【별첨 3】 분야별 담당자 안내 ····· 50

I. 개요

1 정책기획

□ 정의

○ 보건의료 R&D의 거시적인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policy)을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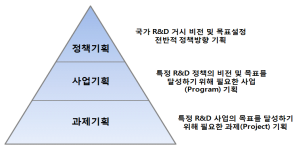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유형 >

□ 목적

○ 보건의료 R&D의 전반적인 동향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및 미래기술 예측조사 등을 통해 보건의료 R&D의 중장기 전략적 투자방향 및 정책방향 도출

- 주요 동향 및 포트폴리오 분석, 미래사회 수요 및 이슈(issue) 도출
- 기술예측조사,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방향 도출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전에 선별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공고 및 신청)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 활용 방안

○ 보건의료분야 미래 핵심기술별 향후 전략방향을 도출하여 기존 정책방향 검증 및 신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

2 사업기획

□ 정의

○ 특정 R&D 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program)을 기획

□ 목적

○ 보건의료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에 앞서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기술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정부지원 타당성 검토
- 국내·외 R&D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해 중점분야 도출 및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 실행단위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 세부추진방안 수립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전에 선별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공고 및 신청)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 활용 방안

○ 기획결과로 도출된 R&D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규 및 계속 추진여부를 검증하고 사업기획을 구체화하여 신규사업 지원에 활용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예산 확보 시 근거자료로 활용 등

3 과제기획

□ 정의

○ 특정 R&D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project)를 기획

□ 목적

○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전 기획연구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최종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여 향후 과제 공모를 위한 연구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개발을 목표

- 시장, 연구동향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과제 또는 기술군 도출
- 후보 개발대상 기술간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대상 과제 선정
- 선정된 개발대상 과제의 최종 연구목표, 단계별 개발 목표, 활용방안과 추진전략 등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 공모를 위한 RFP 개발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전에 선별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공고 및 신청)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가능

○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 활용 방안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사업별 중점 추진과제 도출 및 적정 예산배분에 활용

○ 신규 과제 공모를 위한 RFP 도출에 활용

4 향후일정

○ 2014. 8. 6. 기획과제 공고

○ 2014. 9. 4. 기획과제 연구계획서 접수 완료

○ 2014. 9. 24. ~ 29. 기획과제 연구계획서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2014. 10. 15.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공모내용

① 보건의료 R&D 프로세스 개선방안(공모)

□ 기획목적

○ 선진화된 보건의료 R&D 제도 혁신방안 도출을 통해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한 기획·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평가관리의 효율화

□ 주요 내용

○ R&D 기획·평가관리체계 분석(국내 및 국외 포함) 및 시사점 도출
○ 기획·평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 기획·평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개선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6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과제1,2,4의 경우 3과제 공통 방향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
*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반적인 식견이 넓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복지부·진흥원간 협의로 구성 예정)
○ 3과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연결된 결과물 도출, 정기적인 기획과제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등

과제1	보건의료 R&D프로세스 개선방안			유형	정책기획
기획 필요성	○ 보건의료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기획, 평가, 과제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성 높고 우수한 기획·평가관리 체계 보완/개선 필요				
목적 및 목표	○ 선진화된 보건의료 R&D 제도 혁신방안 도출을 통해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한 기획·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평가관리의 효율화				
주요 내용	○ R&D 기획·평가관리체계 분석(국내 및 국외 포함) 및 시사점 도출 - 복지부 R&D 전문기관(진흥원)을 포함한 타 전문기관(연구재단, 산기평 등)과의 기획·평가관리체계 및 시스템 분석 - 국내 R&D 규모와 유사한 국외(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위스 등) 선진 기획·평가관리체계 분석 및 최근 동향 분석 - 보건의료 R&D 체계 관련 니즈(수요자, 과제관리자, 전문가대상) 조사 분석 - 국·내외 기획·평가관리체계 및 니즈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기획·평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 기획·평가관리체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예시: 기획수요발굴 및 기획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평가위원 풀 이력관리 및 검증, 해외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 평가 참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Peer Review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 프로세스 도입, 평가위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원 방안(평가전 집체교육, 평가시 check list), 평가위원 인센티브 제도 등 - 기획·평가관리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예시: 평가위원 평가수행 모니터링을 통한 질적관리, 연구자/평가위원간의 상관관계 지수 개선 등 - 선도형 R&D 추진을 위한 기획·평가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 예시: 성실실패 제도 구체화, 중복과제 허용, 경쟁률 높은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등 - 기획·평가관리체계 개선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기획·평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추진전략, 추진체계, 세부추진내용 도출 등 세부추진계획 마련 - 개선된 기획·평가관리체계 홍보(설명회 등) 방안 마련 - 소요예산·인력 추정 및 확보 방안 제시 ○ 개선 기대효과 및 관련 법·규정·지침 등에 대한 정책 제언				
기간	6개월	소요비용	60백만 원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과제1,2,4의 경우 3과제 공통 방향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 *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반적인 식견이 넓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복지부·진흥원간 협의로 구성 예정) 4. 3과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연결된 결과물 도출, 정기적인 기획과제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5.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② 보건의료 R&D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 및 추진전략 수립(공모)

□ 기획목적

○ 복지부 R&D 사업 전반을 검토·분석하여 유사사업 통·폐합, 대형사업단 구조개편 등 효율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중개·임상연구 발전 전략 수립

□ 주요내용

○ 국내외 R&D 사업구조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복지부 R&D 사업체계 개편(안) 도출

○ 복지부 고유 특성을 반영한 중개·임상 연구 발전전략 수립

○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 지원규모 : 100백만 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과제1,2,4의 경우 3과제 공통 방향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

*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반적인 식견이 넓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복지부·진흥원간 협의로 구성 예정)

○ 3과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연결된 결과물 도출, 정기적인 기획과제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등

과제2	보건의료 R&D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 및 추진전략 수립			유형	정책기획
기획 필요성	○ 정부 R&D 투자는 연평균증가율, GDP 대비 비중* 등에서 이미 세계 상위권 수준, 제한된 정부 연구개발예산** 전략적 투자를 위한 R&D 사업구조 효율화 필요 * '12년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4.36%로 세계 1위,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권(약 654억 달러)수준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R&D투자 증가율을 하향 조정.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R&D투자 연평균 증가율(%) : 5.0('12-'16) → 4.3('13-'17) ○ 기존 복잡·다기(多岐)화된 보건의료 R&D 예산・사업구조'는 불필요한 중복 오해와 예산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사업별 내역 통합 조정 필요 * '14년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질환극복기술개발 등 17개 사업, 3356.1억원), 질병관리본부(감염병 관리기술개발사업 등 7개 사업, 309억원), 국립암센터(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등 2개 사업, 304.7억원) 등				
목적 및 목표	○ 복지부 R&D 사업 전반을 검토·분석하여 유사사업 통·폐합, 대형사업단 구조개편 등 효율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중개·임상연구 발전 전략 수립				
주요 내용	○ 국내외 R&D 사업구조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복지부 R&D 사업구조 현황 분석 ・유형, 재원, 예산규모, 핵심목적, 성과목표, 기술특성 등 복지부R&D 현황 분석 * 기획 주관연구팀과 진흥원, 질본, 암센터 등 R&D전문기관의 TF 구성・운영을 통해 현황 분석 ・복지부 R&D전문기관(진흥원, 질본, 암센터)에 대한 사업 관리 현황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전년도 유사중복 정비시 검토된 내용 등 기존 복지부 R&D 사업에 대한 내·외부 지적사항 조사 ・복지부 R&D 현황 및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국외 대형사업 관리 현황, 타부처 R&D사업 개편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타부처 R&D 개편 관계자 In-depth interview 실시 ○ 복지부 R&D사업체계 개편(안) 도출 - 부내 및 타부처 R&D 사업 개편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수요자), 전문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 복지부 R&D 사업의 미션 및 범위 명확화 - 복지부 R&D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성과, 재원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R&D 사업체계 개편(안) 도출 * 질환극복기술개발, 임상연구인프라, 유전체공동연구사업 등 사업 과목구조개편 포함 - 대형사업단의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개편(안) 도출 -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단)간 연계·개선방안 도출 ○ 복지부 고유 특성을 반영한 중개·임상 연구 발전전략 수립 - 중개·임상 연구의 범위 재설정 및 목적 지향적인 발전 전략, 로드맵 등 수립 - 중개·임상 관련 R&D 사업과 타 사업의 효율적 연계 체계 구축 전략 마련 * 타부처 R&D 사업간의 연계, 복지부 R&D 사업간의 연계 등 ○ 기대효과 및 정책 제언 - 사업 재구조화시 사회경제적, 기술적 기대효과 분석 - 새로 도출된 사업 체계의 법・제도・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제시				
기간	10개월	소요비용	100백만 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과제1,2,4의 경우 3과제 공통 방향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 *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반적인 식견이 넓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복지부·진흥원간 협의로 구성 예정) 4. 3과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연결된 결과물 도출, 정기적인 기획과제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5.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③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II단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공모)

□ 기획목적

○ I단계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분석 통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II단계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 주요내용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자체평가를 대비한 성과관리 체계 점검 및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I단계 사업단 최종평가 및 II단계 사업 진입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화 전략 제시

○ II단계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8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제3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II단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유형	정책기획
기획 필요성	○ 2015년도 자체평가 대응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마련 ○ 2009년 선정된 2개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의 II단계사업 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I단계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기준 마련 필요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간의 보다 구체적인 차별화 및 연계 전략 필요				
목적 및 목표	○ I단계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분석 통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II단계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주요 내용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자체평가를 대비한 성과관리 체계 점검 및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R&D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R&D사업과 차별화된 성과목표, 정량적 성과지표 개발 -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질적 성과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및 성과분석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표에 따른 자체평가 분석 보고서 작성 ○ I단계 사업단 최종평가 및 II단계 사업 진입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 I단계 종료과제의 사업 수행의 우수성 및 성과평가 등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마련 - II단계 진입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지표(안) 제시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화 전략 제시 - 각 과제의 마일스톤 기준에서 사업 차별성 제시 - 병원의 R&D 거버넌스 내에서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과 연계 및 차별화 방안 제시 ○ II단계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 II단계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II단계 과제 종료시점의 사업단별 정량적 기대성과 조사·분석 수행 - II단계 사업의 최소 요구성과 등 II단계 사업 추진계획 제시 ○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기간	6개월	소요비용	8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5회 이상의 자문회의 의견수렴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3. 월별 기획과제 추진현황 보고 및 중간보고회 2회 개최 4. 사업 성과자료 등 사업관련 자료는 본 기획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로서 과제 수행 종료이후 폐기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함				

2 성과분석

①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체계 혁신 방안 및 성과조사·분석 연구(공모)

□ 기획목적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성과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검증,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전략적 대응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하고, 보건의료 R&D 성과활용·확산체계 고도화

□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자체/상위평가) 대응전략 수립
○ 사업별 정량·정성적 성과분석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사업별 결과보고서 작성(사업별)
○ 보건의료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표준 성과목표-지표」개발
○ 보건의료 R&D 성과 활용·확산·환류 체계 고도화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 지원규모 : 18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과제1,2,4의 경우 3과제 공통 방향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
  *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반적인 식견이 넓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복지부·진흥원간 협의로 구성 예정)
○ 3과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연결된 결과물 도출, 정기적인 기획과제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등

과제4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체계 혁신방안 및 성과조사·분석 연구			유형	성과분석
목적 및 목표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성과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질적 우수성 검증 ○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상위/자체)의 전략적 대응 및 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 ○ 보건의료 R&D 성과활용·확산체계 고도화				
주요 내용	○ 정량·정성적 성과분석(사업별 분석포함) - 성과 분류, 검증 프로세스 정립, 성과분석 모형 등 성과조사·분석 체계 구축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검증,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도출, 사업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대상사업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100세시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 사업 특성을 고려한 논리모형, 성과지표, 심층 성과분석 이슈 및 성과분석방법론 도출 * 대상사업별 단계별(투입, 활동, 산출, 결과), 심층(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체계성) 성과분석 결과 도출 * 사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 도출 및 분석결과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사업별)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근거한 보고서 작성, 근거자료 정리 및 제시 ○ 보건의료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표준 성과목표-지표」개발 - 사업분석 모형 및 성과지표 도출 모형 구축 - 보건의료 R&D 사업유형과 기술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목표-지표」개발을 통한 자체/상위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R&D 표준 성과지표(질적 성과지표 포함) 제시 - 전문가,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 보건의료 R&D 성과 활용·확산·환류 체계 고도화 - 성과중심의 R&D 사업관리를 위한 전주기 성과관리체계 구축 * 성과 분류 기준 표준화, 성과 검증 프로세스 정립, 성과분석 모형 구축, 연구성과 공개·확산 촉진 전략 등 -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성과활용을 위한 유망기술 발굴·활용체계 정립 * 후보기술 발굴체계, 성과맵 분석체계, 후속사업 연계방안, 산·학·연·병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융합 R&D 공동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 보건의료 R&D 성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체계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홍보현황 진단 및 보건의료R&D 핵심 홍보전략 제시				
기간	10개월	소요비용	18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과제1,2,4의 경우 3과제 공통 방향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 * 보건의료 R&D 사업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반적인 식견이 넓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복지부·진흥원간 협의로 구성 예정) 3. 3과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연결된 결과물 도출, 정기적인 기획과제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① 보건의료 Big Data R&D 중장기 전략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연구(공모)

□ 기획목적

○ 보건의료 Big data 현황 분석 및 정부 R&D지원 타당성 확보

○ 차별화된 복지부 차원의 보건의료 Big data 기술 추진 전략 및 핵심 기술 분야·영역 발굴

○ 핵심 기술·분야별 로드맵(기술 중심 로드맵은 지양) 작성 및 보건복지부 차원의 R&D 실행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연구 현황 조사

○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및 핵심 추진과제 도출

○ 핵심 추진 과제별 로드맵 및 세부 추진 방안 수립

○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은 기존사업의 세부과제발굴(RPF포함)을 위한 기획임

과제	보건의료 Big Data R&D 중장기 전략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미래 보건 의료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질병 예방 및 예측,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변화의 수단으로 부각 ○ 정부 3.0 시대를 맞아 국내 보건의료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요구				
목적 및 목표	○ 보건의료 Big data 현황 분석 및 정부 R&D지원 타당성 확보 ○ 차별화된 복지부 차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술 추진 전략 및 핵심 기술 분야·영역 발굴 ○ 핵심 기술·분야별 로드맵(기술 중심 로드맵은 지양) 작성 및 보건복지부 차원의 R&D 실행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연구 현황 조사 -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 트렌드 및 거시적 환경 분석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기술, 연구, 산업동향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성(개인정보, 규제, 윤리 문제 등) 등 종합적인 분석 * 국내 활용 가능한 공공, 민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조사 포함 ○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및 핵심 추진과제 도출 - 사업 개념 및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비전 및 목표 설정 -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점 추진 전략 마련 * 보건복지부의 정책 미션 및 국가 R&D 정책 부합성, 타 부처 추진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확보 - 중점 추진 전략에 따른 핵심 추진 과제 발굴 *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자 R&D 수요 분석 추진 ○ 핵심 추진 과제별 로드맵 및 세부 추진 방안 수립 - 핵심 추진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 전략, 세부 추진내용, 예산,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기획 및 RFP 개발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및 활용 시 제한 요소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상세 기획 추진 -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 총 예산, 사업 관리 계획 제시 ○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사업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기간	8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은 기존사업의 세부과제발굴(RPF포함)을 위한 기획임				

② 의료-IT 헬스 케어 R&D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공모)

□ 기획목적

○ 의료-IT 융합 기술 연구 현황 분석 및 정부 R&D지원 타당성 확보

○ 차별화된 복지부 차원의 의료-IT 중장기 추진 전략 및 핵심 기술 분야·영역 발굴

○ 핵심 기술·분야별 로드맵(기술 중심 로드맵은 지양) 작성 및 보건복지부 차원의 R&D 실행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의료-IT 융합 기술 관련 연구 현황 조사

○ 의료-IT 융합 사업의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

○ 의료-IT 융합 핵심 기술·영역 분야 발굴

○ 핵심 기술·영역별 로드맵 및 실행 방안 수립

○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8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은 기존사업의 세부과제발굴(RPF포함)을 위한 기획임

과제	의료-IT 헬스 케어 R&D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의료-IT 융합 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신의료서비스 창출과 더불어 국민건강 및 보건 산업 육성 등 사회전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주요 선진국은 의료-IT 융합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시장 창출을 위해 R&D 연구 가속화 중 ○ 의료-IT 헬스 케어(의료영역, 개인건강 영역 등) 분야 전반에 대한 R&D 전략 마련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목적 및 목표	○ 의료-IT 융합 기술 연구 현황 분석 및 정부 R&D지원 타당성 확보 ○ 차별화된 복지부 차원의 의료-IT 중장기 추진 전략 및 핵심 기술 분야·영역 발굴 ○ 핵심 기술· 분야별 로드맵(기술 중심 로드맵은 지양) 작성 및 보건복지부 차원의 R&D 실행방안 마련				
주요 내용	○ 의료-IT 융합 기술 관련 연구 현황 조사 - 의료-IT 융합기술 분야 미래 트렌드 및 거시적 환경 분석 - 의료-IT 정책, 기술, 연구, 산업동향 등 종합적인 동향 분석 ○ 의료-IT 융합 사업의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 - 사업 개념 및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비전 및 목표 설정 -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복지부만의 의료-IT 중장기 중점 추진 전략 마련 * 보건복지부의 정책 미션 및 국가 R&D 정책 부합성, 타 부처 추진 사업과의 차별성, 시급성 측면의 R&D 지원 타당성 확보 ○ 의료-IT 융합 핵심 기술·영역 분야 발굴 - 중점 추진 전략에 따른 핵심 추진 기술·영역 발굴 * 정책 및 타부처 계획 등 고려한 핵심 기술·영역 선정 지표 개발 *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자 R&D 수요 분석 추진 * 실제 의료 환경 또는 IT기반 건강관리 기술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효용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 포함 ○ 핵심 기술·영역별 로드맵 및 실행 방안 수립 - 핵심 기술·영역별 기술 로드맵 작성 및 상세 기획을 통한 RFP 개발 - 사업 실행 방안 수립 시 추진일정, 예산, 성과지표, 예상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관리 모델 수립 ○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 사업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기간	8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 본 사업은 기존사업의 세부과제발굴(RPF포함)을 위한 기획임				

③ 보건의료서비스 R&D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지정)

□ 기획목적

○ 보건의료서비스R&D의 개념과 범위 재정립 및 장·단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추진방향 조정

□ 주요내용

○ 보건의료서비스R&D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투자방향 수립

○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세부추진 계획수립 및 중점 후보과제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제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세부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보건의료서비스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분야이나, u-Health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되어 혁신효과가 미흡한 실정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요를 반영한 보건의료서비스R&D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이를 통한 연구개발투자 방향의 전략적 조정 필요 ○ 기술기반 보건의료 R&D와 달리 보건의료서비스 고유 특성을 반영한 R&D사업 추진방향 차별화 및 재정립 필요				
목적 및 목표	○ 보건의료서비스R&D의 개념과 범위 재정립 및 장·단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추진방향 조정				
주요 내용	○ 보건의료서비스R&D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 주요 선진국의 보건의료서비스R&D 목표와 방향, 동향 분석 - 국내 보건의료정책·서비스 및 타분야 서비스관련 R&D 지원현황과 방향성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의 특성분석과 이슈 도출: 공공성과 산업성 - 보건의료서비스R&D 사업의 개념, 범위, 방향, 역할의 새로운 정립 ○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투자방향 수립 -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한계 분석 -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수립 - 보건의료서비스R&D의 단계별(2015~2020) 중점분야, 지원방향 및 로드맵 제시 * 공공성 향상을 위한 의료 질 향상, 의료형평성 제고의 전략적 방향과 연계 *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성과목표-지표상의 전략 및 성과목표와 투자방향 연계 ○ 보건의료서비스R&D사업 세부추진 계획수립 및 중점 후보과제 제시 - 산·학·연·病 및 일반인 대상으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및 후보과제 수요 조사 - 실행단위별 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등을 포함한 R&D 시행계획 수립 - 세부추진전략의 우선순위 검토 및 수요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R&D 중점 분야와 중점 후보과제 제시 - 사업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지정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④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 기획 연구 (공모)

□ 기획목적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추진 전략 도출

○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의 예방·진단·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R&D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주요 핵심사업 발굴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 성과 확산(out reach) 전략 수립(거버넌스)

□ 주요내용

○ 국내외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 지원현황 및 최신 연구동향 조사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사업의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 중점 연구 분야 도출 및 분야별 추진 전략 마련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사업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3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제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 기획 연구			유형	사업기획
기획 필요성	○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무절제한 음주습관 등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알코올 남용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함 * 만19세 이상 월간 음주율 : 남 75.7%, 여 44.2%(국건영, '11년) * 문제음주자 비율 : 남 57.8%, 여 17%(복지부, '09년), 알코올사용장애인구 : 5.6% 203만명('06), * 음주기인 질병 및 사고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연간 7.36조(보사연, '13년) ○ 알코올 남용은 중독성 질환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을 증가시켜 이에 따른 사망률이 해외 대비 높음 *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 : 전세계 3.8%, 국내 8.7%(WHO, '04년) ○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알코올 섭취에 따른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전략 마련 필요				
목적 및 목표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 확보 및 추진 전략 도출 ○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의 예방·진단·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R&D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주요 핵심사업 발굴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 성과 확산(out reach) 전략 수립(거버넌스)				
주요 내용	○ 국내외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 지원현황 및 최신 연구동향 조사 - 국내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발생현황, 유병률, 사망률 등 관련 통계조사·분석 -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관련 정부지원 현황 조사 - 국내외 기술동향(특허 및 논문동향, 기술수준 등) 조사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사업의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의 필요성 제시 (국가 R&D정책과의 부합성, 사회적 여건 및 환경 고려 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시급성 측면) - 사업추진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 중점 연구 분야 도출 및 분야별 추진전략 마련 - 국내현황에 적합한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미충족 수요(의료, 교육·홍보 등) 조사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 연구자 대상 인터뷰 및 의견수렴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관련 R&D 대상 및 연구범위 설정 - 국내외 R&D 종합 분석결과에 따른 국내 및 국제협력 R&D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실행단위별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등 세부사업 기획 - 사업성과 목표제시 - 사업 성과 확산 전략(out reach) 제시(교육, 홍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전략) ○ 사업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 사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				
기간	6개월	소요비용	3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① 최근 빈도수가 급증하는 여성암의 미충족 의료수요 파악 및 극복을 위한 기획연구(공모)

□ 기획목적

○ 급증하는 여성암 분야 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여성암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R&D 지원 타당성 확보 및 추진 전략 수립

□ 주요내용

○ 여성암 관련 질환의 국내외 연구 현황 분석
○ 국내외 여성암 R&D 지원현황 파악 및 분석
○ 여성암 R&D 지원 타당성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마련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5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제	최근 빈도수가 급증하는 여성암의 미충족 의료수요 파악 및 극복을 위한 기획연구			유형	과제기획
기획 필요성	○ 암 발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특히,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5.7%) 남성(1.6%)보다 약 3배 이상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암 R&D 지원이 미비 ○ 최근 빈도수가 급증하는 여성암에 대한 국내외 현황 파악을 통하여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목적 및 목표	○ 급증하는 여성암 분야 질환 극복을 위한 국내외 연구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여성암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R&D 지원 타당성 확보 및 추진 전략 수립				
주요 내용	○ 여성암 관련 질환의 국내외 연구 현황 분석 (※ 최근 빈도수가 급증하는 여성암 중에서 2개 이상의 질환을 포함할 것을 권장) - 해당 질환의 빈도수 증가 요인 분석(환경적 요인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선진국과의 현황 비교·분석 - 해당 질환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 조사 ○ 국내외 여성암 R&D 지원현황 파악 및 분석 - 국내외 부처별 여성암 R&D 지원 현황 비교(지원 분야, 지원액 등) - 해당 질환 관련 논문, 특허 등 서지분석 - 해당 질환 치료방법 국내외 연구 현황 ○ 여성암 R&D 지원 타당성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마련 - 현황 분석을 통한 복지부 여성암 R&D 투자·지원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모델) 수립 - 여성암 R&D 추진을 위한 핵심영역 도출 - 여성암 R&D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기대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여성암 관련 연구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 질병 극복 중심의 공백 영역 또는 집중 투자 영역을 발굴하고, 복지부 여성암 R&D 지원 타당성 확보 및 R&D 추진계획 마련				
기간	6개월	소요비용	5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②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전략 수립 기획 연구(공모)

□ 기획목적

○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병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치매치료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할 체계적인 R&D 기획 및 중개연구 방법론 수립

□ 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파악 및 분석
○ 치매치료제 관련 R&D 중점 연구분야 도출 및 R&D 추진전략 수립
○ 구체적인 과제 추진 방안 마련
○ 평가계획 및 기대효과 분석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20백만원 이내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과제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전략 수립 기획 연구			유형	과제기획
기획 필요성	○ 사회적 환경이 지식사회·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적 제약회사도 아직 근본 치료제 개발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산업사회 주역인 암 치료제보다 2~3배 큰 수요가 예상되어 병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개발중개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획이 절실				
목적 및 목표	○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병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치매치료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할 체계적인 R&D 기획 및 중개연구 방법론 수립				
주요 내용	○ 연구배경 및 타당성 검토 - 연구대상 질환의 범위 및 국내외 질환현황 - 치매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 조사·분석 - 연구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파악 및 분석 - 치매치료제 연구의 국내외 현황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 치매관련 논문, 특허 등 서지 분석 - 치매치료제 개발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 주요 선진국의 관련 연구지원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비교 ○ 치매치료제 관련 R&D 중점 연구분야 도출 및 R&D 추진전략 수립 - 치매치료제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에 따른 R&D 중점 연구 분야 도출 및 R&D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기초 및 중개·임상연구를 포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융합·병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전략 수립 - 연구단계별 중장기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도출 ○ 구체적인 과제 추진 방안 마련 - 단계별 사업성과 목표 및 소요예산,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사업 기획 - 연구개발 제안요청서(RFP) 작성 ○ 평가계획 및 기대효과 분석 - 과제의 효과적 선정과 관리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 - 과제의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방안				
기간	6개월	소요비용	20백만원 이내	추진방식	공모
비고	1.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2. 참여연구원으로 기획 관련 전문인력(기획과제 기 수행 또는 관련 전공* 인력) 참여권장 * 기술경영, 경영, 산업공학 등 3.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진흥원장의 소유로 함				

Ⅲ.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23호, 2014.1.31.) >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23호, 2014.1.31.) >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의 임면권자(대학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 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4. 10. 15.)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제한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 본 기획연구는 3책5공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 전 숙지 사항

○ 신청 연구자는 원하는 각 지원과제별 세부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기획과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형(R&D) 과제일 경우 평가 전 사전선별에서 탈락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제출을 협약 시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전문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②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2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의 작성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계획서 A(기획과제)형(2014년도 신청용)"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사업안내 → 관련서식)

- 첨부서류 리스트는 전산입력 시 전산입력화면에서 해당 사항 체크

* 체크한 첨부서류 리스트와 제출된 서류가 다를 경우, 과제선정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복지부 산하 3대 과제관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된 과제관리시스템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서 서식은 전산입력 후 자동 작성되는 사항과 한글(hwp)로 작성하는 사항(계획, 첨부서류)으로 구성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합본 및 제본 관련 사항은 서식 내 [일반 작성요령] 참고

□ 전산입력 안내

○ 연구계획서 작성 이외에 추후 과제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을 병행하여야 함 (https://www.htdream.kr/)

○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전산입력과정을 선행하여야 함

○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모든 공식자료가 작성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전산입력 시 입력프로그램 내 "인건비작성기준표", "연구개발비작성기준" 등 필독 후 입력요망)

○ 인명정보, 기관정보, 과제정보는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므로 연구자 및 기관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정보를 수정하여야 과제의 신청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짐

○ 과제정보 입력 시에는 인명정보시스템과 기관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과제정보를 입력 전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함

□ 연구비 산정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2014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별첨1)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삭감하여 지원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의 사업안내->관련법령->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참고

※ 간접비 계상기준 - 본 과제는 기획과제 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후 서류제출

-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요망

②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제출기한

전산입력 기한	기획연구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또는 공문제출)
2014.8.20.(수)~9.4.(목) 18:00	2014.9.5.(금) 18:00	2014.9.5.(금) 18:00

※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

Ⅳ.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선정

□ 전문기관의 사전선별 심사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해당 첨부서류 목록, 기획과제 부합성 등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 과제 결정 (전문기관 사전선별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하나 자료요구마감일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탈락 처리됨)

□ 구두평가

○ 1단계 평가 프로그램으로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구두발표 후 평가

□ 평가점수 계산방식

○ 평가점수를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점수 산출

□ 주요 평가기준

○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능력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능력

□ 기타사항

○ 기타 평가에 대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을 준용

2 평가절차

사전선별

서류 검토
(전문기관)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자격, 기획연구 부합성, 참여 제한, 과제구성요건, 첨부서류 등의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과제 결정(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기회 부여)

⇩

선정평가

구두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능력의 우수성 등을 주로 평가

·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미만 탈락**

⇩

전문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 확정 ⇨ 최종선정 통보 및 연구 개시

① 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단,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세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

② 과제관리

□ 착수 회의(Kick-off 회의)

○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발표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착수회의에 참가하여 RFP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검토

□ 중간보고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요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 까지)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진도점검 발표 시행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중간보고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향후 계획 등 검토

□ 최종보고서 검독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 종료 시점에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검독회 개최

- 검독회에서 건의된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 제출

○ 담당 공무원,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최종보고서 검독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중간보고서 검독회 시 건의된 수정사항 이행도 등 검토

*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의 양식은 별지 기획과제 최종보고서 서식에 따름

□ 최종보고서 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전문기관은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

□ 기타 준수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접수 장소 및 문의처

○ **접수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2층 융합R&D기획팀 (우 363-700)
대표전화 : 043-713-8889/8728 FAX : 043-713-8911

○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htdream.kr) 참조

○ **문의처**

분야별 기획 담당자 : **【별첨 3】 분야별 기획 담당자 안내 참조(p49)**

☞ 신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의료 R&D포탈 고객지원(질의응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1】 2014년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공통)

구분 비목	구분 세목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정의》 구분 / 정의 내부 인건비 /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 연봉제 미적용 기관 /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기관 /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직접비	1 인건비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u>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u>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 ※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직접비	1 인건비	**【참고사항】** ○ **<u>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u>**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 하려는 경우 ○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 ○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수행기관 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불인정 사항】**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2 학생 인건비	**《계상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① 학사과정 : 월 1,000천원 ② 석사과정 : 월 1,800천원 ③ 박사과정 : 월 2,500천원 ④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참고사항】** ○ **<u>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u>** :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3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용도】** **1. 연구시설·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설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재료비·전산처리비**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계상 가능하며, 자체제작할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에 등에 반영

직접비	3 연구장비 · 재료비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참고사항】** ○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 운영 - 예산집행시점에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 심사평가 ○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 비치할 것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강화) ※ 정산시 해당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 ○<u>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u>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제종료 2개월전 구입 및 설치 완료) ○ **현물 산정기준**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 장부가의 20퍼센트를 산정. -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불인정 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

직접비	4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1.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회의수당 포함),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비임상·임상시험비는 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으로써, 당초계획 대비하여 비임상·임상시험비의 예산의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전문기관(진흥원 과제담당자)에 문의 후 진행.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 연구개발비 규모(협약시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세부) 1과제 :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기관(과제) 추가시 정산수수료의 5퍼센트가산
※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

○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직접비	4 연구 활동비	**【불인정 사항】**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 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5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1.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을 말함 3. **회의비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4. **연구과제 수행식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 ※ 국 · 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 · 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불인정 사항】**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식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 구입 · 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직접비	6 연구 수당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참고사항 】**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비례하여 연구수당 감액.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불인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7 위탁연구 개발비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 **<u>전문기관(진흥원) 사전승인 사항</u>**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의 예산(총액)의 변경시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간접비	8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간접비	8 간접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불인정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불인정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기기 ·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 · 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 ○ 시제품 · 시작품 · 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시약 · 재료구입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등), 세미나 개최비 ○ 외부시험 분석료 ○ 세부과제 조정 · 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기술도입비 ○ 내부 시험분석료, ○ 기술정보수집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세부과제 조정 · 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위탁연구 개발비	-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 개설한 통장사본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민간부담금 중 현금 확인서류	·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 전자협약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협약체결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별첨 3】 분야별 담당자 안내

기획유형	과제명	담당자	연락처
정책기획	보건의료 R&D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명선 (융합RnD기획팀) 유미영 (신약개발지원팀)	043-713-8758 (mslee@khidi.or.kr) 043-713-8530 (ymy1027@khidi.or.kr)
정책기획	보건의료 R&D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 효율화 및 추진전략 수립	전용웅 (RnD사업기획팀)	043-713-8770 (ywjeon@khidi.or.kr)
정책기획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II단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권보배 (특성화연구지원팀)	043-713-8443 (bobae00@khidi.or.kr)
성과분석	보건의료 R&D 성과관리 체계 혁신 방안 및 성과조사·분석 연구	우현영 (RnD성과분석정보팀)	043-713-8414 (whyrd@khidi.or.kr)
사업기획	보건의료 Big Data R&D 중장기 전략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연구	박정원 (의료기기기술지원팀)	043-713-8230 (garden85@khidi.or.kr)
사업기획	의료-IT 헬스 케어 R&D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박정원 (의료기기기술지원팀)	043-713-8230 (garden85@khidi.or.kr)
사업기획	보건의료서비스 R&D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박지현 (건강기반구축단)	043-713-8899 (jihss@khidi.or.kr)
사업기획	알코올 기인 만성질환 R&D 사업 기획 연구	김미경 (RnD사업기획팀) 제영태 (중개연구지원팀)	043-713-8397 (kimmk@khidi.or.kr) 043-713-8330 (ytje@khidi.or.kr)
과제기획	최근 빈도수가 급증하는 여성암의 미충족 의료수요 파악 및 극복을 위한 기획연구	이미희 (중개연구지원팀)	043-713-8934 (mhlee@khidi.or.kr)
과제기획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전략 수립 기획 연구	오세형 (신약개발지원팀)	043-713-8114 (sho0326@khidi.or.kr)
전산입력사항 관련		배영신 (RnD성과분석정보팀)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RnD성과분석정보팀)	043-713-8297 (bulpae@khidi.or.kr)
		이주희 (RnD성과분석정보팀)	043-713-8395 (pourmoi1@khidi.or.kr)